大田直轄市都市開發事業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目　　次

1. 審 査 經 過 ---------- 2

2. 提案說明要旨 ----------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 3

4. 質疑 및 答辯 要旨 ---------- 4

5. 討 論 要 旨 ---------- 4

6. 審 査 結 果 ---------- 4

大田直轄市都市開發事業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審 査 報 告

1991年 12月 27日
內 務 委 員 會

1.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19日

다. 上 程 日 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財務局長)

가. 提案理由

○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住宅改良 再開發事業과 都市 低所得 住民의 住居環境 改善을 爲한 臨時措置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住居環境 改善 地區내에서 住居環境 改善 事業 施行을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免除 하였으나

○ 課稅免除 期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同條例에 다음 事項을 反映하여 一定其間 課稅 免除를 하고져 함.

나 主要骨子

o 免除對象 事業을 明確히 하고자 함 (第 2 條)

- 從前에는 都市再開發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再開發區域으로 하였으나 都市再開發 事業에 있어 商業用 建物등은 開發利益이 많으므로 都市再開發法 第 2條 第 2號의 規定에 의한 住宅改良 再開發 事業으로 限定하고자 함.

o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자 함 (附則 第 ② 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91年 12月 31日 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安鍾贊)

本 改正條例案은 都市再開發 事業을 促進하고자 都市再開發區域 및 住居環境 改善事業 施行을 爲한 課稅免除 條例가 '91年末로 時限滿了됨에 따라 免除對象 事業을 明確히 限定하고 時限을 延長하여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1. 11. 21.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案으로서

첫째 : 都市再開發 事業에 商業用 建築物은 開發利益이 莫大하므로 再開發 區域에 있어 都市再開發法 第 2條 第 2號의 規定에 의한 住宅改良 再開發 事業으로 限定하는 것이며 (第 2條)

둘째 : 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 月 31日 까지 延長하려는 事案임(附則 第 ②項)

以上은 都市內 土地의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高度利用과 都市機能의 回復을 爲하여 施行하는 都市再開發事業에 있어서 都市의 健全한 發展과 公共福利의 增進을 目的으로하는 住宅의 建設, 建築物의 改良, 公共施設의 整備 事業 等은 地方稅法 第 7條의 規定에 依한 公益上의 事由에 該當하므로 一定期間 課稅免除코저하는 改正案이 妥當하다고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5. 討 論 要 旨 : 省 略

6. 審 査 結 果 : 原案 可決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所有土地·建物 및 自動車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案番號 60

1991. 12. 16.
大 田 直 轄 市 長

1. 提 案 理 由

가. 國家有功者들의 生活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自活勇士村에 集團居住하는 重傷痍者가 自活勇士村內에서 所有하는 土地·建物 및 보철용 乘用自動車와 國家 有功者 禮遇等에 관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國家有功者가 直接 使用하는 보철용 乘用 自動車에 대하여 土地·建物은 都市計劃稅와 消防共同施設稅를 自動車는 取得稅와 登錄稅, 自動車稅를 課稅免除 하였으나

나. 課稅免除 其間이 '91년 末로 滿了됨에 따라 同條例에 다음 事項을 反映하여 一定其間 課稅 免除를 하고져 함.

2. 主 要 骨 子

가. 課稅免除 對象을 調整하고져 함 (第 2條)

- 從前에는 보철용 乘用 自動車에 있어 4기통 以下로 하였으나 2000cc 以下로 調整
- 從前에는 下肢 系統 傷痍者만을 支援하였으나 上肢 系統傷痍者를 追加하여 支援.

나.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져 함 (附則 第 2 項)

-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 日 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하고져 함.

3 參 考 事 項

○ 國家有功者 禮遇등에 관한 法律適用 對象 國家有功者 (法律 第 4條)

○ 殉國先烈, 愛國志士, 戰歿・戰傷・殉職・公傷軍警, 武功・保國殊勳者, 6.25 參戰 在日 學徒義勇軍人, 4.19義擧傷痍・死亡者 殉職・公傷 公務員 等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과세)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 等을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여야 한다.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 法 豫 告

○ 期 間 : '92. 11. 23 ~ '91. 11. 12. (20 日間)

○ 方 法 : 揭示公告 및 市公報 揭載 ('91. 11. 28 第 74 號)

○ 結 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4기통"을 "2000씨씨"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 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도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씨씨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조(면제대상) ①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승용자동차(4기통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제세를 면제한다. 1. 토지. 건물: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2.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내지 5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2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2급은 분류번호 14,79,98,102,104,105호, 3급은 분류번호 5,22,23,24,27,31,78,81,83,86,89,503호, 4급은 분류번호 109,112,113,504호, 5급은 분류번호 26,29,41,77,92,505호에 해당하는 자	제 2조(면제대상) ① ---------- 2000씨씨 ----------.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 구분표 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씨씨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에 한하며, 이경우 분류번호 503, 504,505호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는 하지계통호수(분류번호30 32,36,37,40,44,47,49,50,53, 54,59,60,67,70,116,117,119, 121,122,126,127,131호)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 칙 (조례 제1972호)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72호) ② (적용시한) ---------- ---------- 1994년 12월 31일 까지 --------

[별표]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 급	14, 79, 98, 99, 102, 104, 105
3 급	5,13, 22,23, 24,27, 31,72, 78,81, 83, 86,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 급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 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番號 61

1991. 12. 16 .
大 田 直 轄 市 長

1. 提 案 理 由

가.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住宅改良 再開發事業과 都市 低所得 住民의 住居環境 改善을 爲한 臨時措置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住居環境改善 地區내에서 住居環境 改善 事業 施行을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建物에 대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免除 하였으나

나. 課稅免除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同條例에 다음 事項을 反映하여 一定期間 課稅 免除를 하고져 함.

2. 主 要 骨 子

가. 免除對象 事業을 明確히 하고져 함. (第 2 條)

- 從前에는 都市再開發法은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再開發區域으로 하였으나 都市再開發 事業에 있어 商業用 建物등은 開發利益이 많으므로 都市再開發法 第 2條 第 2號의 規定에 의한 住宅改良再開發事業으로 限定하고자 함.

나.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져 함 (附則 第 ② 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91 年 12月 31日 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고져 함.

3. 參 考 事 項

○ 都市再開發法

第 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再開發事業"이라 함은 再開發區域안에서 土地의 合理的이고 효율적인 高度利用과 都市機能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行하는 建築物 및 그 敷地의 整備와 垈地의 造成 및 公共施設의 整備에 관한 事業과 이에 附帶되는 事業을 말하며, 都心地 再開發事業과 住宅改良再開發事業으로 區分하여 施行한다.

○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 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

第 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住居環境改善事業"이라 함은 住居環境改善地區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住宅의 建設, 建築物의 개량, 公共施設의 整備, 所得源의 開發등 第 6條의 規定에 의한 住居環境改善 計劃을 따라 행하여지는 事業을 말한다.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 課稅)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 等을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여야 한다.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 法 豫 告

○ 其 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 法 : 揭示 公告 및 市 公報 揭載 ('91. 11. 28 第 74 號)

○ 結 果 : 意見 없음

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재개발구역"을 "재개발구역 (도시 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고하고, 동항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부터"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조(과세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 2조(과세면제) ① ---------- ---------- ----------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 ---------- ---------- ----------.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1. ---------- ---------- ---------- ---------- ----------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조례 제1704호)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04호) ② (적용시한) ---------- ---------- 1994년 12월 31일 까지 --------.